2016회계연도 결산숭인의 건

의 안 번 호 1352

제출연월일: 2017. 5. 31. 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 및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세입세출결산보고서

○ 수납액 : 367,006백만원, 지출액 : 283,314백만원, 총잉여금 : 83,691백만원 나. 기금결산보고서

○ 전년도말 5,974백만원, 수납액 : 1,775백만원, 지출액 : 1,275백만원, 잔액 : 6,474백만원

다. 채권현재액보고서 : 채권현재액 3,515백만원

라.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

1) 토지 : 2,804필지 현재액 398,138백만원

2) 건물 : 117동 현재액 69,162백만원

3) 기타 : 1,568건 33,370백만원

마. 물품 현재액보고서 : 553종 9,557백만원

3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

나.「지방회계법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

4. 참고사항

가.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: 2017. 4. 20. ~ 5. 2. (20일간)

나. 결산검사 결과: 붙임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음

의 안 번 호

1352

[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]

종 합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5. 31.(수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상임위 심사 : 2017. 6. 8.(목) ~ 6. 16.(금)

라. 예결위 회부 : 2017. 6. 16.(금) 마. 예결위 심사 : 2017. 6. 19.(월)

2. 제안이유: 「지방자치법」제134조 및「지방회계법시행령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결산 승인을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세입·세출 결산 총괄

(단위:처원)

	회계별	예산현액	세입결산액(A)	세출결산액(B)	세계잉여금(A-B)
	계	368,910,380	367,006,198	283,314,216	83,691,982
일	반회계	354,429,845	352,313,048	276,260,321	76,052,727
특	- 별 회 계	14,480,535	14,693,150	7,053,895	7,639,255
	의료급여기금	343,537	373,507	316,913	56,594
	주 차 장	14,115,908	14,298,661	6,736,982	7,561,679
	기반시설	21,090	20,982	0	20,982

나. 세계잉여금

(단위:천원)

						(1171.7171
회계별	ᅰ	계 순세계 보조금 잉여금 집행잔액			이 월 액	
외 세 별	Al		집행잔액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
계	83,691,982	27,139,340	2,354,911	25,988,632	1,162,428	27,046,671
일반회계	76,052,727	24,808,981	2,324,209	22,213,347	1,162,428	25,543,762
특별회계	7,639,255	2,330,359	30,702	3,775,285	_	1,502,909

다. 세 입

(단위:천원)

회계별	예산현액	징수결정액 (A)	수납액(B)	미수납액 (A-B)	결손처분	수납율 (B/A)
계	368,910,380	383,211,356	367,006,198	16,205,158	2,345,045	% 95.8
일반회계	354,429,845	364,173,009	352,313,048	11,859,961	2,238,462	96.7
특별회계	14,480,535	19,038,347	14,693,150	4,345,197	106,583	77.2

2 (제197회-본회의제2차부록)

라. 세 출

(단위:천원)

회계별	예산현액(A)	지출액(B)	이월액	집행진액(C)	집행율 (B/A)	불용율 (C/A)
계	368,910,380	283,314,317	60,632,731	25,163,432	% 76.79	% 6.82
일반회계	354,429,845	276,260,321	55,154,537	23,014,987	77.94	6.49
특별회계	14,480,535	7,053,895	5,278,194	2,148,445	48.71	14.83

마.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

예산전용: 10건 597,215천원예산이체: 13건 493,967천원

바.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상태

(단위:천원)

과 목	일반회계	특별회계	기금회계	계
자산 총계	908,505,104	56,145,709	8,106,057	972,756,870
부채 총계	7,638,194	736,114	21,603	8,395,911
순자산 총계	900,866,910	55,409,595	8,084,454	964,360,959
부채와 순자산 총계	908,505,104	56,145,709	8,106,057	972,756,870

※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

사.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전년도말	당해연도	- 증감액	당해연도말	
1 元	현 재 액	증 가	감 소	현 재 액	
계	474,678,286	35,961,245	9,968,315	500,671,216	
행 정 재 산	469,313,492	34,782,452	9,466,153	494,629,791	
일 반 재 산	5,364,794	1,178,793	502,162	6,041,425	

아.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

(단위:천원)

전년도말	당해연도 증감액		당해연도말	
현 재 액	취 득	처 분	현 재 액	
508개	77개	32개	553개	
8,834,107	781,996	58,798	9,557,305	

자. 성인지 결산

(단위:천원)

			<u>`</u>	(- 11 /
사업별	사업개수	세출예산현액	지출액	집행률
계	53	22,397,045	21,145,567	94.41%
여성정책추진사업	9	6,532,361	6,246,782	95.63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42	15,603,234	14,637,816	93.81
자치단체특화사업	2	261,450	260,969	99.82

※ 성인지 결산서는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에 따라 작성 제출

4. 검토요지

가. 세입·세출 결산총괄

○ 총 세입결산액은 367,006백만원, 총 세출결산액은 283,314백만원으로 세계잉여 금이 83,692백만원이며,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.139백만원임.

나. 세 입 총 괄

- 세입예산현액은 368,910백만원, 징수결정액은 383,211백만원이며**수납액은** 징수 결정액의 95.8%인 **367,006백만원**으로 전년대비 0.7%증가하였으나, 세입예산현 액 대비 수납비율은 99.5%로 전년도 102% 미치지 못함.
- 미수납액은 전년도 16,243백만원보다 감소한 16,205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4.2%이며,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.6%인 2,34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643백만원보다 27.4%증가한 사항임.

다. 세 출 총 괄

- 세출예산현액은 368,910백만원, 지출액은 283,314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은 76.8%로 전년도 집행율 82.5%에 비해 다소 낮음.
- 이월액은 60,632백만원이고 집행잔액(불용액)은 예산현액 대비6.8%인 25.163백 만원으로 나타남.
-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총계는 전년도 933,110백만원보다 39,647백만원이 증가한 972,757백만원이며, 부채총계는 8,396백만원, 순자산 규모는 964,361백만원임.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부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크게 나타남.

라. 검토의견

- 자치단체의 결산심사는 1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예산이 당초 편성한 예산과목구조 와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신중한 사업계획과 체계적인 집행계획으 로 공사지연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여 나갈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5. 심사의견

-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논의된 다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 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서 등 작성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함.
- 주요 지적사항 : 3건
 - 가) 추경시 불용액 삭감 및 세외수입 경정 편성 미흡 나)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분석 미흡

 - 다) 일부 세외수입 예산편성 미흡
- 개선요구 사항 : 1건
 - 가)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재작성 제출 결산서 구성 보고선인 "201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"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에 오류가 많아,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,
 - 201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 내용과 연계되는 "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"를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까지 수정 제출해 줄 것을 요구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